



제 43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1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실험시설 개념 도입 및 실험 동물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신설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17.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 및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사용 횟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부재하여 실습 과정에서 동일 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이용되는 사례, 적절한 의료·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가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감독기관 역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9조의2, 제97조제5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실험시설 개념 도입 및 실험 동물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신설

개정안은 동물의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의 개념을 신설하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실험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동물실험시설</u> ”이란 동물의 <u>미용·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제9조의2(<u>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u>) ① <u>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실험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생 략)
2. ~ 12. (생 략)

1. 실습 동물의 특성,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여 실습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것

2. 실습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3.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실습시설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 략) 2. ~ 1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 략) 2. ~ 26. (생 략) ④·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8.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2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생산업·미용업 등)에 대한 등록·허가와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관을 통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관리될 뿐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¹⁾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실습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이용되고, 적절한 의료·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등 실습동물에 대한 관리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습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동물미용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교육시설로서만 규율되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장시간의 동물 이용이나 실습동물의 확보·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u>애견 미용·훈련</u> , 강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	---

2) 애견미용학원에서 사육되던 실습견 수십 마리가 오물과 털이 엉킨 사육시설에서 방치되고 미용 실습 외 번식에도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된 사례(오마이뉴스, 2025.9.13.), 번식 능력이 저하된 번식견이 미용 실습견으로 전용되어 상처를 입은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된 사례(조선비즈, 2024.10.20.)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이를 「동물보호법」의 규율 범위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실습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이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제2호는 “실습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관리’,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의 구체적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97조제5항제1호), 이처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임에도 준수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벌칙의 전제가 되는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의 기본적인 기준³⁾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3) 실습시간의 상한 및 휴식시간의 하한 등

확보하고 벌칙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이라는 새로운 시설 유형을 신설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등록·신고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86조제2항⁴⁾은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관련 허가·등록 영업자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을 같은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물실험시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86조제2항의 출입·검사 대상에 동물실험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실험

4)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행위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동물실험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 학원·학교 등의 설립·등록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개별 소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동물미용업 관련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동물 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⁵⁾

따라서 동물실험시설에서 문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시설의 영업·운영 제한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과의 제도적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실험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적절한 보호·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준수 사항·벌칙 조항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의규정상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6094)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424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